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,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·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 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음.

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심의·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 삭제(안 제23조)

나. 분과위원회의 명칭 정비(안 제28조)

다.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개정(안 제3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2. 6. 2. ~ 6. 22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삭제한다.

제28조제1항제4호 중 “먹거리생태·상생분과”를 “먹거리생태·상생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“먹거리건강·보장분과”를 “먹거리건강·보장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“먹거리공동체분과”를 “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“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”를 “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제35조 중 “2022년 9월 21일”을 “2024년 9월 2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구성) ①~② (생 략)	제23조(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
1. 당연직 위원 : 행정1부시장, 정책기획관, 여성가족정책실장, 복지정책실장, 평생교육국장, 시민건강국장	1. ----- : -----, (<u>삭제</u>), ----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~⑤ (생 략)	③~⑤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(생 략)	제28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먹거리생태·상생분과</u> : 먹거리 관련 도농상생 활성화,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회복력, 먹거리 자원순환(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화 등)등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	4. <u>먹거리생태·상생분과위원회</u> : ----- ----- ----- -----
5. <u>먹거리건강·보장분과</u> :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생활 증진(영양부족,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)을 위한 지침개발,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, 재난 대비 서울시민의 먹거리 보장전략 및 정책제안 등 지원활동	5. <u>먹거리건강·보장분과위원회</u> 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6. <u>먹거리공동체분과</u> :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, 이해관계자(시·자치구-먹거리공동체 등) 협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제안, 먹거리공동체와 지역사회 먹거리 자원 발굴 및 전략구축 등 지원활동	6. <u>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</u> :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7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</u> : 지속가능한 먹거리 서울구현을 위한 먹거리시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활동, 지속가능한	7. <u>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</u> : -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먹거리문화 정착 및 행복한 먹거리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, 먹거리 전략 2030 성 과확산을 위한 지원활동	----- -----
제3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<u>2022년 9월 21일</u> 까지로 한 다.	제35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4년 9월 21일</u> ----- -----.

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 용 추 계 서 미 첨 부 사 유 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최대 111명의 위촉직 위원 회의 수당이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임 (산출근거 : 111명×150,000원×6회 = 99,900천원)

4. 작성자

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김정호(02-2133-4709)